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180 |
|----------|------|

제출연월일: 2023. 11. 9.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라. 구민의 책무(안 제4조)
- 마.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바. 실태조사(안 제6조)
- 사. 지원대상(안 제7조)
- 아. 지원기준(안 제8조)
- 자. 지원신청(안 제9조)
- 차. 유지관리(안 제10조)
- 카. 홍보 등(안 제11조)
- 타.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10 (제260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42209호, 2023. 10. 30.)

라. 입법예고: 2023. 10. 4. ~ 10. 24.(20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 방z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침수 방z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z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z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z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호의 설치금액 범위 이내에서 설치비용의 전액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4 (제260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가. 삭제 <2017.10.24>
 -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지원 대상)

-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2022년(4년간) 예산 집행액 기준
 - 2019 : 118백만원 / 2020 : 81백만원 / 2021 : 118백만원 / 2022 : 150백만원
- 향후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예상하여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지출 | 침수방지지원사업 | 200 | 200 | 150 | 150 | 150 | 850 |
| | 소계(a) | 200 | 200 | 150 | 150 | 150 | 850 |
| 수입 | 재난관리기금 | 200 | 200 | 150 | 150 | 150 | 850 |
| | 소계(b) | 200 | 200 | 150 | 150 | 150 | 850 |
| 총비용(a-b) | | 0 | 0 | 0 | 0 | 0 | 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재난관리기금 | | 200 | 200 | 150 | 150 | 150 | 850 |

1.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2. 협의사항: 작성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내부 검토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를 거쳐 확정

3. 작성자: 안전총괄과 시설9급 정진협 (☎052-290-4066)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 | | | | | |
| 구비 | 재난관리기금 | 200 | 200 | 150 | 150 | 150 | 850 |
| 합계 | | 200 | 200 | 150 | 150 | 150 | 850 |

2.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수입(재난관리기금)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작성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내부 검토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를 거쳐
확정

5. 작성자

- 안전총괄과 시설9급 정진협 (☎052-290-4066)